

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수시공시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22 조(수시공시) 및 신탁약관 제 51 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등)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.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Tops Value 주식투자신탁 1 호

2. 시행일 : 2007. 10. 8.

3.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

◇ 변경 내용 : 클래스 신설

- (1) C2 클래스 : 일임형랩 및 간접투자기구만 투자하는 클래스
- (2) C-e 클래스 : 인터넷 가입용

◇ 변경 대비표

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<p>제 14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자산운용회사는 제 8 조 및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증권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A 클래스 수익증권 2. C 클래스 수익증권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~⑤ (생 략)</p>	<p>제 14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자산운용회사는 제 8 조 및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증권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A 클래스 수익증권 2. C 클래스 수익증권 3. C2 클래스 수익증권 4. C-e 클래스 수익증권 ②~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20 조(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 1. A 클래스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 있음 2. C 클래스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~③ (생 략)</p>	<p>제 20 조(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 1. A 클래스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 있음 2. C 클래스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3. C2 클래스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중 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간접투자기구 4. C-e 클래스 수익증권 : 온라인 가입자 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40 조(투자신탁보수) ①~② (생 략)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</p>	<p>제 40 조(투자신탁보수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</p>

<p>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A 클래스 수익증권 가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7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8.0 다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</p> <p>2. C 클래스 수익증권 가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7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8.0 다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A 클래스 수익증권 가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7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8.0 다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</p> <p>2. C 클래스 수익증권 가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7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8.0 다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</p> <p><u>3. C2 클래스 수익증권</u> <u>가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7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0</u> <u>다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</u></p> <p><u>4. C-e 클래스 수익증권</u> <u>가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7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6.0</u> <u>다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</u></p>
<p><u><부칙 신설></u></p>	<p>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7 년 10 월 8 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